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1. 19. 오세희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4. 11.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2. 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4. 17.)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4. 23.)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오세희의원)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

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는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상인연합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및 제7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인규)

1.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되면 상인연합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상인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상인연합회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상인연합회의 업무에 대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면 상인연합회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도·감독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집행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인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의 신설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²⁾처럼 직접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행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9조(벌칙) ① (생략)

②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성민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오세희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상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연합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상인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연합회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임.

6.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 폐기).